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141호

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

「오피스텔 건축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1년 10월 14일

국토교통부장관

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'제3조의4'를 '제3조의5'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)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라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제14호나목2)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,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 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.